

## 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) 공시송달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5조(청문)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, 법인의 본점 사무실,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 불명, 이사,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2. 25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	
당사자	성명(명칭)	(주)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용석
	주 소	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6-11, 205호(초량동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2021년 2월 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, 독립된 사무실 미확보, 상근 전문인력 미보유, 시정명령의 미이행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<p>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</p> <p>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</li> <li>3.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. (후략)</li> </ol> <p>4~11. (생략)</p>	

	「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11조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”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파산·부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 또는 조합 관리가 어렵게 된 때를 말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서명	투자회수 관리과	담당자	윤민지
	주소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			전화번호	042-481-4420
	일시	2021년 4월 1일(목) 10시		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중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			
	성명	최재욱				

**<청문시 유의사항>**

1.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, 「행정절차법」 제12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2.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4.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5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[별지 제11호서식] 의견제출서. 1부.

2. [별지 제3호서식]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. 1부. 끝.